

의안번호	2215275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6. 4. 30.
추계번호	25B7117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9조제5항·제6항·제7항(영업의 허가) 신설	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함(제5항)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(제6항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, 인력,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(제7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9조제5항·제6항·제7항(영업의 허가) 신설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갱신허가 평가(안 제69조제7항 신설)

-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, 동물수입업,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(이하 “동물생산업등”이라 함)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¹⁾하고 있음

1) 제69조(영업의 허가) ① 반려동물(이하 이 장에서 "동물"이라 한다. 다만,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)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[표 1]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 현황

(단위: 개소)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동물생산업	2,019	2,086	2,011	2,010
동물수입업	122	125	94	122
동물판매업	4,010	3,944	3,154	3,114
동물장묘업	63	68	74	83
합 계	6,214	6,223	5,333	5,329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(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)

-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,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면서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, 인력,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등에 대하여 시설, 인력,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에 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평가 방법·범위·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-
1. 동물생산업
 2. 동물수입업
 3. 동물판매업
 4. 동물장묘업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